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712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와 정보의 입력 주체, 입력 시기, 제출 내용 등을 규정(안 제5조부터 제17조)

나. 관리주체가 소관시설에 대해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하여야 하는 기반시설 정보의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3조)

다. 기반시설 정보의 신뢰성 확보, 보존, 공개 및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의 역할을 규정(안 제24조부터 제27조)

라.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사용권한 부여, 백업, 보안, 장애복구 및 정보연계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운영기관의 역할을 규정(안 제28조부터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자치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

○ 전자우편 : young9652@korea.kr

○ 팩스 : 044-201-557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044-201-4159, 49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